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2019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안내

2019. 01

I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

II

2019년
세부 자금 별
지원계획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01. 정책자금 지원체계



02. 정책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전략산업 영위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행성오락업종, 고소득 직종,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소상공인 등은 지원제외

*전략산업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 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02. 정책자금 지원대상

☞ 용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용자제외 제재조치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I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⑦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및 재창업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청기업 중 국내 복귀기업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02. 정책자금 지원대상

☞ 용자제한기업

⑧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용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점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종업원 수 5명 미만
 - *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인 기업
(단,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02. 정책자금 지원대상

☞ 용자제한기업

⑩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년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용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복합금융사업(성장공유형대출) 심의위원회 및 중소기업 일관지원사업심의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 보증서부 정책자금 용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하는 자문에 한하여 적용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 용자제한 사유(⑦, ⑨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인증기업(NEP·NEI)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사업성 예비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용자지원 가능

※ 기타 용자제한기업 항목(①~⑫)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용자계획에서 규정

※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03. 정책자금 규모

(단위 : 억원)

사업	예산	내역사업	사업분야
 창업기업자금	20,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창업지원 • 일자리 창출촉진 • 개발기술사업화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육성 기업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투융자복합금융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공유형 • 성장공유형 	저금리 대출 후 영업이익 공유 전환사채 인수방식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수출 초보기업 수출 유망기업(10만불 이상)
 신성장기반자금	8,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유망 • 제조현장스마트 	성장유망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자동화 시설 도입
 재도약지원자금	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환, 무역조정 • 구조개선전용 • 재창업 	업종전환(추가) 및 FTA 무역피해기업 부실징후기업 실패 기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중소기업 • 일시적경영애로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피해기업 경영애로기업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예산 총계 : 36,700(경남권 3,413억원, 9.3%)

04. 정책자금 기준금리

정책자금 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사업별 가감금리

① 기준금리 (19.1분기 2.30%)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연동(조정계수 차감)

* 분기별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 전전분기 종료월 21일 ~ 전분기 종료월 20일 ’ 누적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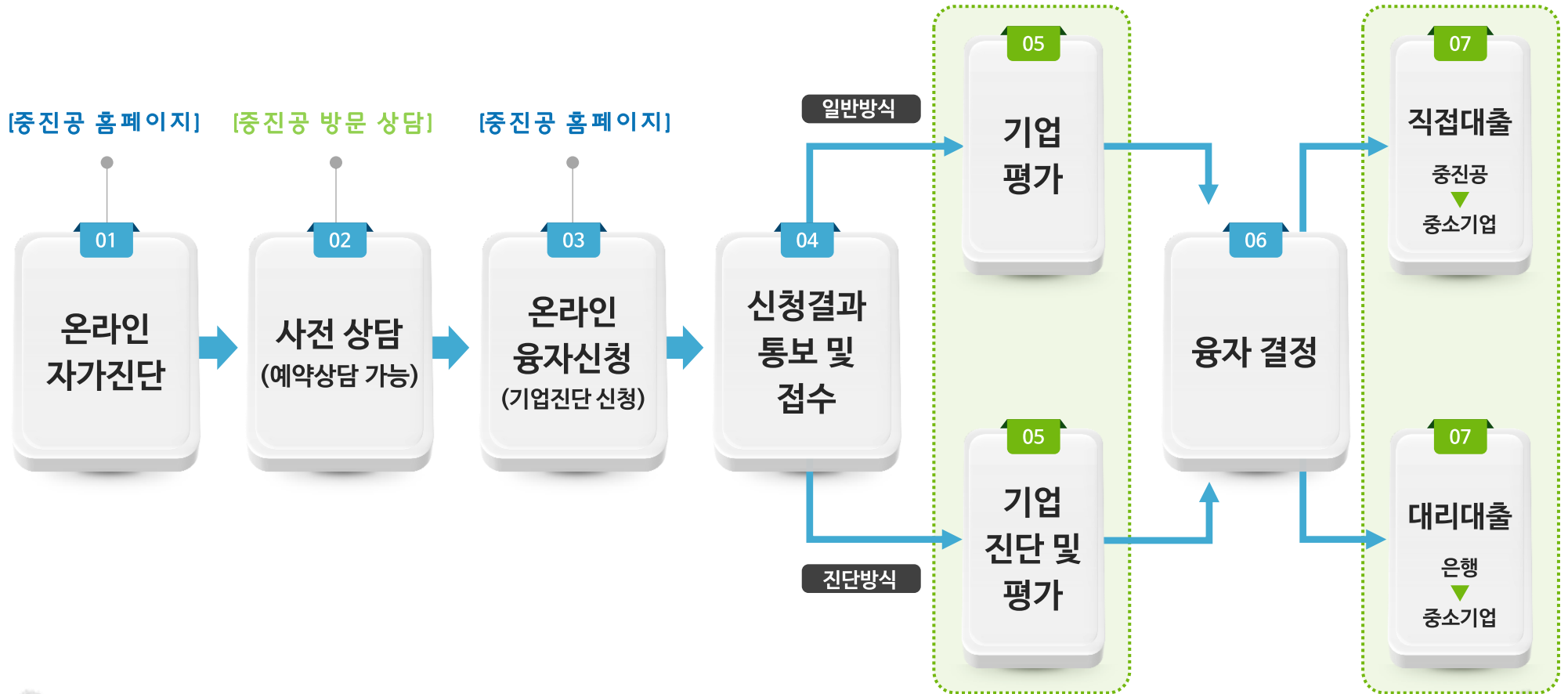
② 사업별 기준금리 그룹

	자금명	사업별 기준 금리
A그룹	창업기업자금 [혁신창업지원, 일자리창출촉진]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0%p
B그룹	창업기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재도약지원,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혁신성장유망자금(협동화), (제조현장스마트화)]	정책자금 기준금리
C그룹	신성장기반 [혁신성장유망자금], 긴급경영안정 [일시적애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p

D그룹

- * 기존 4그룹 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1.05%p 폐지)
- * 청년전용 창업자금(연 2.0%), 재도약지원자금(무역조정)(연 2.0%) 등 일부 자금은 고정금리
- * 시설자금은 0.3%p 금리 우대
- * 정책자금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1년 이내 3회이상 운전자금 지원 시 가산금리 0.3%p 부과

05. 정책자금 지원절차



06. 용자 신청 및 접수

용자신청은 **온라인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시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온라인자가진단

용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
 상담하여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여부 결정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
 기업, 시설투자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사전상담 예약 시 우선상담

온라인신청

신청기회를 부여 받은 기업은
 기한 내에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용자신청

* 온라인으로 용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07. 정책자금 평가방식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통한 기술사업성 평가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Version 1.0

- 시기 : '04년
- 주요내용 : 기업평가 모형 도입

Version 2.0

- 시기 : '05~'08년
- 주요내용 : 평가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Version 3.0

- 시기 : '09~'18년
- 주요내용 : 기술사업성 중심 평가 모형 개편 및 고도화

기술사업성 등급을 기본 등급으로 산출하고, 신용위험등급을 최소 조정 반영하여 **기업평가 등급 산출**

* 업력 3년 미만, 재창업자금 대상 기업의 경우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출

기업평가

기술 사업성 평가

기술사업성평가모형 » 기술사업성 평점 » 기술사업성 등급

신용 위험 평가

재무모형 » 재무평점
 계량비재무모형 » 계량비재무평점
 대표자모형 » 대표자평점

Model Combination

신용 위험 등급

최소 조정 반영

용자지원결정

기업 평가 등급

08. 정책자금 집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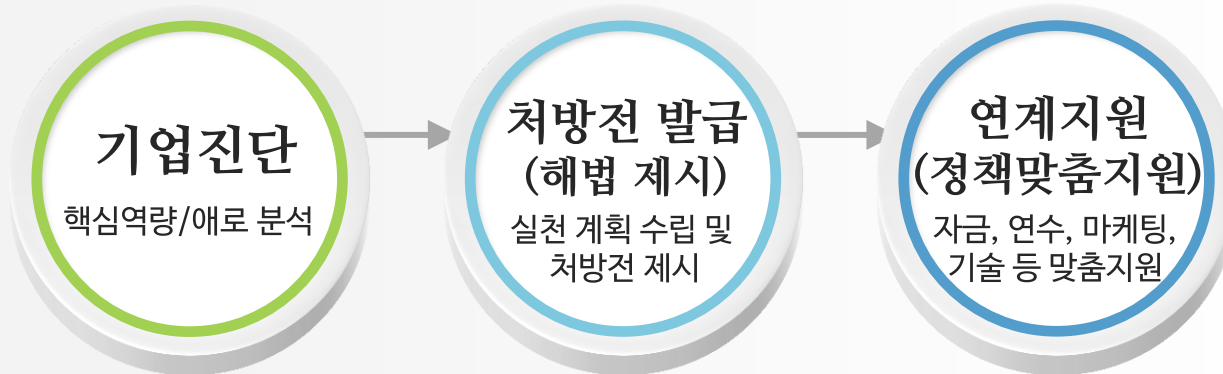
진단기반 맞춤형연계지원

* 기업 여건에 따라 Two-Track(기업진단 연계 또는 일반지원)으로 운영

	기업진단 연계 방식	일반 방식
지원절차	진단신청 → 진단·평가 → 자금지원+맞춤연계	자금신청 → 평가 → 자금지원
처리기간	기업진단의 별도 운영기준에 따름	기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기업진단 프로그램 추진체계

* 업종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를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료를 위한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09. 정책자금 상환절차

상환안내

- ✓ 대출금 지급 후 2일(토요일, 휴일제외) 후에 상환기일표를 등기로 발송
- ✓ 원리금 납입기일 20일 전에 대출원리금 상환안내문을 e-mail, 우편 등으로 안내
- ✓ 중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고객으로 등록된 업체는 상환 2일전에 SMS로 별도 통지

상환방법

	원금	이자
상환방법	매 월납 또는 분기납 선택	매월 후취

- ✓ 자동납부 희망업체는 자동이체를 활용
- ✓ 업체 희망에 따라 조기상환 가능
- ✓ 일시적 자금경색 회복을 위한 상환유예 가능

납입기일

- ✓ 선택한 상환방법에 따라 대출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결정
- ✓ 수출금융지원자금 등 회전한도방식 융자금은 대출기간 종료일이 납입기일



09. 정책자금 상환절차

기업자율 상환제도

-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 * 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 대상자금 :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中 운전자금

상환비율

- ✓ 최소상환 비율인 15%이상 중에서 자율 선택 가능

(예시)

- ✓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상환비율	15%			15%	70%
상환금액	7.5백만원			7.5백만원	35백만원

*대출금액 50백만 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10.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제3자 부당개입 제재기준

- (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할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중진공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10.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제3자 부당개입 제재조치

부당개입 행위자

- 부당개입 활동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되거나 정책목적성이 훼손될 경우 형사고발, 자격정지, 정부사업 참여 제한 조치

부당개입 중소기업

- 융자금 조기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신고자

- 범죄사실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중진공 홈페이지 → 참여광장 →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온라인신고센터

I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

II

2019년
세부 자금 별
지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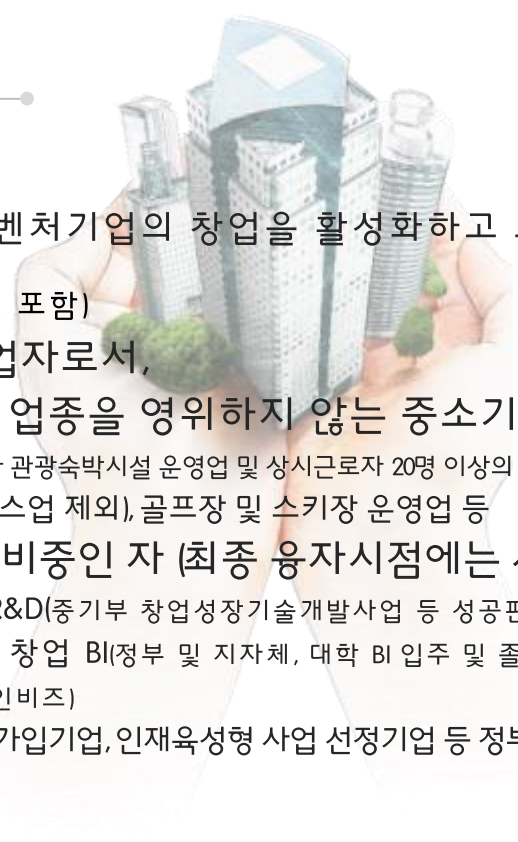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01. 창업기업자금(혁신창업지원)

혁신창업지원

-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용자규모** 20,800억원 (청년전용 창업자금 1,3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2,800억원 포함)



01 용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 사업개시일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 창업사업연계자금 : 창업투자(민간VC 등 투자유지), 창업 R&D(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창업양성(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등), 창업 BI(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경영, 기술혁신형 창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 일자리창출촉진 : 3년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02 대출금리(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일자리창출 촉진자금은 정책 우대금리 0.1%p 추가적용

03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투자자금 7년 이내(거치 3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04 대출한도

업체당 잔액기준 60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 70억원)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05 대출방법

I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01. 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 사업목적**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
- 용자규모** 1,300억원



01 용자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용자시점에 사업자등록 필요)

02 대출금리(고정금리)

연 2.0%

03 대출기간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 3년)
 *운전자금 대출 기업은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

04 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이내

05 지원방식 (용자상환금조정형)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01.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용자규모 2,800억원

01 용자대상

① 다음 하나의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② 자체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02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투자자금 7년 이내(거치 3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04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05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02. 투융자복합금융

투융자복합금융

-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 도모
- 융자규모** 2,000억원

신청 대상

이익
공유형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 기업

성장
공유형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02.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조건



이익공유형

- ✔ **고정이자** : 0.5% (대출기간 중 고정)
 - ✔ **성과배분이자** : 대출일 이후 3년간(거치기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성장공유형

- ✔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 ✔ 지원기간 내 IPO가능성 등 판단하여 전환권 행사(중진공 결정)
- ✔ 미 전환 시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이내)

기업당 연간 60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 업력 3년 미만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03.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용자규모** 500억원

- 01 **용자대상**
 -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수출 10만불 미만)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 내수기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으로 한정
- 02 **용자범위**
 - |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03 **대출금리 (기준금리)**
 -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4 **대출기간**
 -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05 **대출한도**
 - |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
- 06 **대출방법**
 - | 중진공 직접대출

03.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용자규모** 1,300억원

- 01 **용자대상** |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02 **용자범위** |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03 **대출금리**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4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05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06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

04.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
-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용자규모

8,800억원
 * 혁신성장유망 3,800억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5,000억원

용자 대상

혁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취약업종 영위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 기반 등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장유망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제외(단, 수출향상(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이 신청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횡수제한 적용 예외)

04. 신성장기반자금

01 용자범위

-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 시험검사장비도입, 사업장건축(토지구입비 포함),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매입, 경 · 공매)자금, 유통 물류시설 설치,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자금 등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 · 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시설자금 50% 이내), 별도기준 충족 시 운전자금 용자가능

02 대출금리 (기준금리)

- I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 · 협업사업 승인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03 대출기간

- I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04 대출한도



- I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05 대출방법

- I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05.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용자규모** 2,300억원

01 용자대상

재창업자금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자
 -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신용 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 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구조개선전용자금

다음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정 경영애로(부실징후 기업으로 지정) 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 판정기업

05.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① 업종전환 등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개념

※ 용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업종전환	업종추가
전환내용	현재 영위업종 사업용 자산 양도, 폐기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전환비중	3년 내 완전전환	3년 내 30% 이상

- * 전환비중 : 전환(추가)업종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 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되어야 함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은 중소기업

※ 용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10%이상 감소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1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 변화를 종합적 고려)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용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05. 재도약지원자금

01 용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 및 시험검사 설비, 정보화 설비,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 소요경비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 가능

02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사업전환자금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재창업 및 사업전환자금은 거치기간 4년 이내)
 * 재창업 및 사업전환자금의 운전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03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04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7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05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06. 긴급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 **사업목적**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 **용자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원

01 용자대상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AI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의 행위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횡수제한 적용 예외

02 용자범위

-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등

03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재해중소기업(고정금리) : 연 2.1% 고정금리 적용

04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05 대출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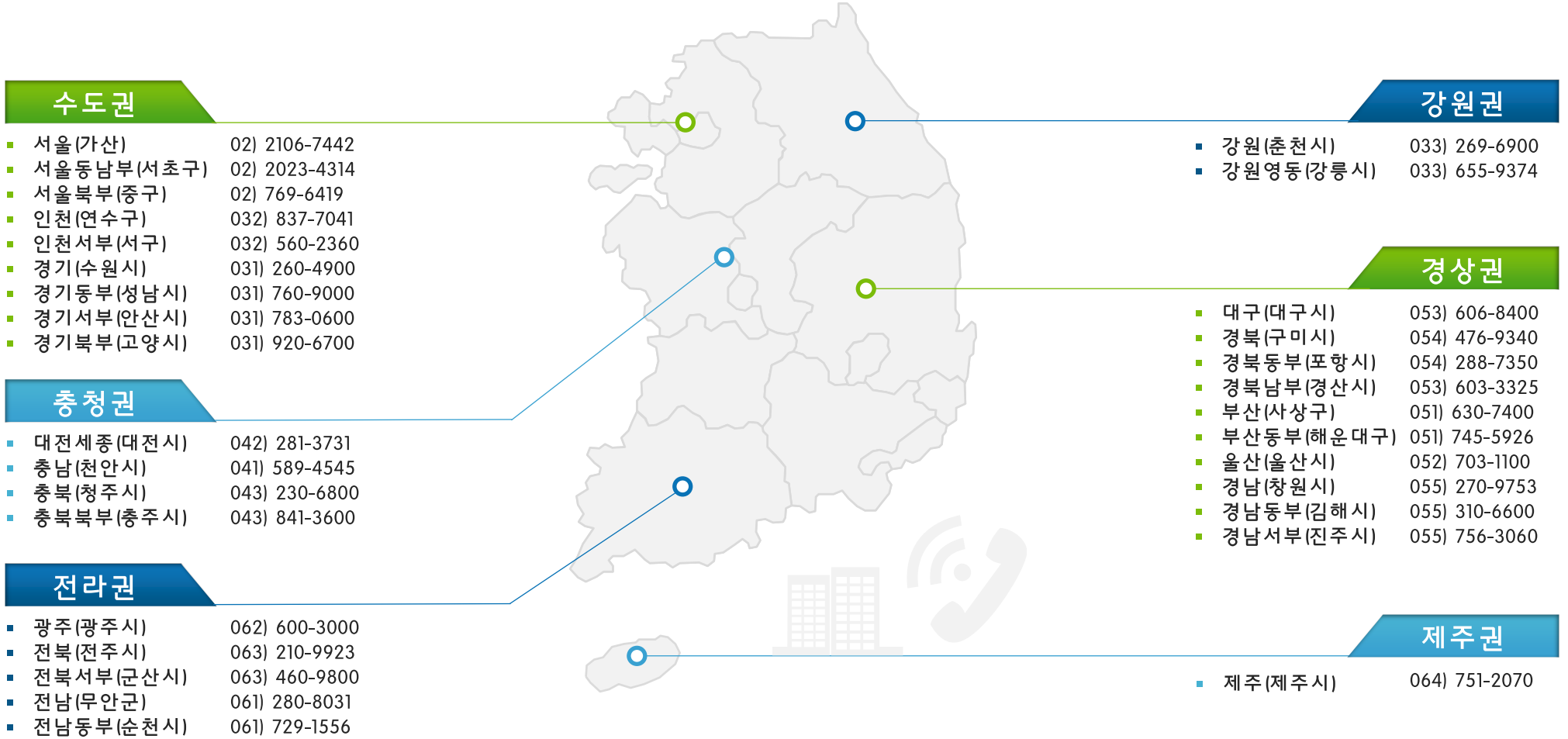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06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참 고

정책자금 상담·문의처 (중진공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 안은 각 지역본·지부 소재지

* 홈페이지 (hp.sbc.or.kr) 내 오시는 길, 관할지역 참조

참고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평창구, 성동구 ,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화성시(송산면, 서산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동부지부	평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산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원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 정선군
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 광주시 ,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옥천군 , 영동군 , 담양시 ,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 옥천군 ,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청음시, 익산시 ,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평주지역본부	평주시, 나주시 , 담양군, 영광군 , 장성군, 함평군 , 회선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장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 함평군 , 나주시 ,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평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합양군, 합천군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감사합니다

